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주체 94(2005)년 7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주체 96(2007)년 10월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2월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1월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945호로 수정보충

주체 105(2016)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068호로수정 보충

주체 106(2017)년 8월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843호로수정 보충

주체 108(2019)년 6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61호로수정 보충

주체 94(2005)년 7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주체 96(2007)년 10월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2월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1월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945호로 수정보충

주체 105(2016)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068호로수정 보충

주체 106(2017)년 8월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843호로수정 보충

주체 108(2019)년 6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61호로수정 보충

주체111(2022)년 7월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00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9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제 1 조 (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예 산수입 법은 국가예 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 산의 납부, 국 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국가예산수입의 정의, 구성)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리득금, 협동단체 리득금,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징금, 기타 수입금 같은것으로 이루어진다.

제 3조 (국가예산수입의 원천과 구분)

국가에 산수입은 독립채산제 , 반독립 채산제 , 예산제로 경 영 활동을 진행 하는 기관, 기 업소와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 업소, 단체라고 함.) 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원천으로 한 다.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으로 나눈다.

중앙예 산수입은 중앙예 산소속 기관, 기 업소, 단체 의 납부금, 지 방예 산수입 은 지 방예 산소속 기관, 기 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한다.

제4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원칙)

국가에 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 의 첫 공정 이 다.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 5조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

증산하고 절 약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 을 늘이 기 위 한 기본방도이 다.

국가는 생산을 늘이고 절약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제 6조 (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

국가예산납부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은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기관, 기 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 7조 (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에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국가예산납부밖의 부담을 줄수 없다.

제 8조 (국가예산관리의 정보화원칙)

국가예산관리의 정보화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수입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 업이 다.

국가는 국가예산관리를 위한 실시간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예산관리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

국가는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으로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 10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 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재정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장악 지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재정 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해당 재정 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12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 규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제 13조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예산납부에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생산,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총액계획, 원가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번호 등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 14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자료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 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되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재정기관에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에 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에 산납부등록증 발급신청 문건도 함께 내야 한다.

제 15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해당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16조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국가예산납부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안으로 변경된 자료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해당 재정 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확인하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17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발급)

국가에 산납부등록증발급신청 문건을 접수한 재정 기관은 신청 문건과 자료를 확인한 다음 국가에 산납부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국가에 산납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에 산납부등록증양식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18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재발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속이 변경되었거나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 19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팔고사지 말아야 한다.

제 20조 (전표의 경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표, 벌금통지서 같은것에 대하여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전표, 벌금통지서 같은것은 사용할수 없다.

제 2 1조 (수입총액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총액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한다.

수입총액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할수 없다.

제 3 장 국가예산의 납부

제 1 절 거래수입금

제 2 2조 (거래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거래수입금은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순소득의 일부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비품판매수입 또는 봉사료수입의 일부를 거래수입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 3조 (거래수입금의 계산방법)

거래수입금의 계산은 소비품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제 2 4조 (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은 정한데 따라 판매한 가격 또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료금으로 계산한다.

제 2 5조 (거래수입금률의 제정)

거래수입금률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부문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거래수입금률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 2 6조 (거래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소속에 따라 거래수입금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거래수입금납부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납부시켜야 한다.

제 2 절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

제 27조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의 정의, 납부대상)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성된 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 리득금 또는 협동단체리득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리득금의 계산방법)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의 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부문별 납부비율에 따라 한다.

제 29 조 (수입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같은 수입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물판매수입금은 판매한 가격으로, 건설조립작업액과 대보수작업액은 설계 예산가격으로, 부가금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으로,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30 조 (리득금의 경상납부)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의 경상납부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국가기업 리득금 또는 협동단체리득금이 수입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입금이 조성될 때마다 하거나 재정 기관이 정한 기일안에 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납부비율을 적용할수 있다.

제 31조 (리득금의 확정 납부)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의 확정납부는 달마다 수입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 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 납부한다.

제 32조 (지방유지금의 납부)

시(구역),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유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시(구역), 군재정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재정기관은 지방유지금을 국가기 업리득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3 조 (국가예산납부에서 특혜보장)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우대해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 납부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

제 34 조 (통합, 분리될 때의 국가예산납부금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될 경우 그 시기까지 회계검증을 하고 15일안으로 해당 예산소속에 따라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제 3 절 감가상각금

제 35 조 (감가상각금의 정의, 납부대상)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 다.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 36 조 (감가상각금납부의 제외 대상)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고정재산
3. 이밖에 감가상각금을 바치지 않기로 한 고정재산

제 37 조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감가상각금의 계산은 형태별고정재산의 시초가격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정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 38 조 (감가상각금의 구성, 적립규모)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시초가격보상몫과 대 보수비보상몫으로 나눈다.

감가상각금의 적립규모는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을 내용년한기간 한해에 회수할 자금에 따라 정한다.

제 39 조 (감가상각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가상각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 초가격을 보상한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대보수비만을 납부한다.

제 4 절 부동산사용료

제40조 (부동산사용료의 정의, 납부대상)

부동산사용료는 국가의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토지, 건물, 자원 같은것에 대하여 한다.

제 41조 (부동산사용료의 구성)

부동산사용료에는 농업 토지 사용료, 부지 사용료, 건물사용료, 어장사용료, 수산자원 증식장 사용료, 도로사용료, 자원사용료, 기타 부동산사용료 같은것이 속한다.

제 42 조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농업부문의 대학에서 육종에 리용하는 농업 토지
2. 새로 개간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토지
3. 자연재해로 류실 또는 매몰된 농업토지
4. 국가 및 협동적소유의 살림집기준부지
5. 철도운영시설부지
6. 협동단체와 기업소의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생산용건물
7. 이밖에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부동산

제43 조 (부동산사용료의 계산방법)

부동산사용료의 계산은 리용하는 부동산가격 또는 면적에 따르는 부동산 사용료기준을 적용하여 한다.

제44 조 (부동산사용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사용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를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절 사회보험료

제4 5조 (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능력상실자와 연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 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근로자의 노동보수자금으로 한다.

제 4 6 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사회보험자와 사회보장자가 받는 연금 및 보조금
2. 비재적근로자에게 주는 노동보수자금
3. 이밖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수입금

제4 7 조 (사회보험료의 계산방법)

사회보험료의 계산은 월노동보수액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제4 8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율)

사회보험료의 납부비율은 월노동보수액의 1%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제4 9 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노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 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농장은 사회 보험 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 사회 보험 기 금으로 적 립 한다.

제 6 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제 50조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의 정의, 구성)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 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 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 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재산판매 및 가격 편차수입금에는 재산판매수입금, 가격 편차수입금, 무역가격 편차 수입

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 5 1 조 (재산판매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포장용기, 설비, 비품 같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자금으로 적립 할수 있다.

제 5 2 조 (가격편차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 업소, 단체는 국가적 또는 지 역적 인 가격변동조치로 가격편차수입금이 생겼을 경 우 그것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완제품 또는 상품의 가격편차수입금은 판매수입금이 조성 되는 차제로 납부하며 류동재산의 가격편차수입 금은 가격 이 변동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가격변동조치로 생긴 손실은 국가예산에서 보상하여줄수 있다.

제 5 3 조 (무역가격 편차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활동과정에 조성된 무역가격편차수입금을 국가 예산에 납 부하여야 한다.

무역 가격 편차수입 금의 계 산은 수출입 상품호상간 가격 편차손익 을 상쇄 하여 한다.

제 5 4 조 (차관, 연불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관 또는 연불로 들여온 물자를 가격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 매하고 부가금을 던 판매수입금을 3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관으로 외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 기관이 정한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에 넣고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을 받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 야 한다.

제 5 5 조 (리 익배 당금의 납부)

합영, 합작기업의 공화국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화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환자시세에 따르는 정해진 비율의 조선원으로, 물자로 받은 리 익배 당금은 정해 진 비율의 상품판매수입 금으로 납부한다.

제 7 절 집 금

제 5 6 조 (집금의 정의)

집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성한 수입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제 57조 (집금의 구성)

집금에는 거래금, 기업소득금, 부동산리용부과금, 재산리용부과금, 영업허가금 같은 것이 속한다.

제 58조 (집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금을 지방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집금의 납부절차와 방법, 납부률과 납부액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 8 절 기타 수입금

제59조 (기타 수입금의 정의, 구성)

기타 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타 수입금에는 무상로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 것이 속한다.

제 60조 (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로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로동보수몹을 정한 기 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1조 (국가수수료, 관세 의 납부)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 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2조 (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3조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4 조 (재산보험료의 납부)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연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5 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공화국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 납부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에 따른다.

제 6 6조 (연체료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은 정한 납부 또는 반환기일을 지연시킨것을 비롯하여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여 받은 연체료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절 특수경제지대수입금

제 6 7조 (특수경제지대수입금의 정의, 구성)

특수경제지대수입금은 특수경제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 경영활동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과 그밖의 수입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특수경제지대 수입금에는 라선 경제 무역지대 수입금, 경제개발구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 6 8조 (특수경제지대수입금의 납부)

특수경제지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된 수입금을 달마다 국가예산에 납부 하여야 한다.

특수경제지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금의 계산, 경상납부, 확정납부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4 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제 6 9조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보관 하는 중요한 사업 이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 리용하는 문건을 책임적 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 70조 (장부의 비치, 기록)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장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자금리용 정형과 수입 총액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금리용정형과 수입총액의 기록은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 또는 기초서류 같은것에 준하여 한다.

제 71조 (국가예산납부에 대한 결산)

국가예산납부의 결산은 년초부터 루계적으로 한다.

결산은 분기별, 년간으로 한다.

제 72조 (국가에 산수입 결산서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에 산납부확정계 산서를 달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결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3조 (국가예산납부문건의 보관기간)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 장부와 은행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납부전표 같은것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분기표, 년간회계 결산서 같은것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4조 (국가예산수입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 통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수입사업에 필요한 설비, 로력, 자료 등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75조 (강제 납부)

국가에 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강제 납부시킨다.

제 76조 (민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연체료의 부과,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77 조 (변상처벌)

이 법을 어겨 국가사회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 78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2.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150만원
3.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경우 150만원
4.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전표, 벌금통지서 같은것을 사용하였거나 처리해주었을 경우 10만~150만원
5. 수입총액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50만~150만
6. 국가예산납부금을 제때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 10만~150만원
7. 국가예산납부문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제정된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10만~150만원

제 79 조 (중지처벌)

제78조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 80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국가예산납부자료를 등록하지 않고 생산,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2.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3. 변경된 국가예 산납부자료를 제때에 재등록하지 않았거나 국가예 산납부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생산,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부당한 구실을 대면서 국가예 산납부자료를 제때에 등록해주지 않거나 국가 예 산납부등 록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생산 및 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국가예 산납부문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제정된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국가예 산수입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8 1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 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3개 월 이 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국가예 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였거나 팔고삐을 경우
2.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전표, 벌금통지서 같은것을 사용하였거나 처리해주 었을 경우
3. 수입총액과 국가예 산납부조성 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4. 국가예 산납부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을 경우
5. 국가예 산납부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 8 2조 (강직, 해 임, 철직 처벌)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 임, 철직 처 벌을 준다.

제 8 3조 (형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 사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8 3조 (형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 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

제 6 장부 직

제 8 4조 (시행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9호 [주체112(2023)년 12월5일] 로 수정보충한 국가예산수입법은 주체112(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